

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

'25. 3. 19.(수) 법무부 이민조사과

1 위원회 개요

- (설치 배경) 보호*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**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('25.6.1. 시행 예정)하여 중립적인 보호 심사기구인 외국인보호위원회***를 설치
 - * 보호 :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실,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처분
 - **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위헌제청(2020헌가1, 2023.3.23.)
 - *** 기속력 있는 결정권을 보유한 상설 행정위원회(합의제행정기관)
- (설치 일자) '25. 6. 1.(예정)
- (설치 근거) 출입국관리법('25. 6. 1. 시행 예정) 제66조의4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4(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)

- ① 외국인 보호·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,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**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.**
-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.

- (설치 장소)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역로 36 5층(예정)
- (기능)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·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·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·결정
- (예상 업무량) 연간 3,300여 건, 위원회 개최 주 1~2회(출석)
- (심리 방식)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
- (수당)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*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
 - * 위원회 출석수당(1일당 150,000원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200,000원), 안건검토수당 등

2 위원회 구성

- (위원회 구성)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9명
 - 법무부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 5명 이상*, 내부위원 4명 이내
 - *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명 포함 /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
 - 비상임위원 6명 이상, 상임위원 3명 이내
 - ※ 상임위원 인원 수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

3 위원 자격 및 임기

○ (위원 자격)

- ①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
- ② 국가정보원·국민권익위원회·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
- ③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④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*에서 법학, 정치학, 사회학,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*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 등
- ⑤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
- ⑥ 그 밖에 ①~⑤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○ (위원 임기) 2년(두 차례 연임 가능)

4 추천 대상

-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또는 법조계, 학계 및 연구기관,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보호 전문가 (주 1~2회 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)

5 향후 일정

- ('25. 3. 19. ~ 4. 8.) 위원 추천 접수
- ('25. 4월) 위원 선정 심사
- ('25. 5월) 위원 임명·위촉(법무부장관)
- ('25. 6. 1.) 외국인보호위원회 발족

○ '25. 4. 8.(화)까지 위원 후보자 추천

- (추천 방법) ❶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와 ❷ 추천 대상자의 이력서를 '온나라 시스템'(수신 : 법무부 이민조사과) 또는 전자우편 (hokim612@korea.kr)으로 제출